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가단102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나2271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가단102649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신장수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곽여명, 이승형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유광후, 이한무

변론종결 2023. 1. 18.

판결선고 2023. 2.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3. 27. 접수 제8623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4.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E, F, G, H, 원고, I, J(모두 2011. 12. 2.자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와 배우자(원고 등의 친모는 아니다)인 피고 C이 있었다.

나. 피고 C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의 남편인 피고 B가 2012. 3. 26.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3. 27. 접수 제86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2.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망인의 상속인 중 G, H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F은 2020.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는데 2012. 3. 26. 피고 C은 120,000,000원을 지급받고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만 매수인 명의는 편의상 피고 B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2012.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또한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K조합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대출액 중 원고의 지분 1/2에 상당한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난다.

3) 갑 제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단4837호로 피고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등과 피고 C은 2012. 3. 26. '원고 등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부동산 또는 매매대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 C을 상대로 더 이상 민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부제소특약) 그 대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망인의 기타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 등에게 양도하고, 추후 위 기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더 이상 민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부제소특약).'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 원고 등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따라 2012. 3. 29. 피고 C을 상대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이뤄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사유인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취지와도 무관한 것으로 이 사건 청구에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등과 피고 C의 관계,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제기 및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 등과 피고 B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상속회복청구권에만 미치고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였는데 그 명의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와 을 제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2013. 5. 28. 원고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도 수차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차입금이 5,000만 원 남았다고 밝힌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 지방세도 납부하여 온 사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이 원고에게 5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의 분담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하여 원고 등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실, 망인의 자녀들 중 원고만이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F은 2020. 4. 28. 소를 취하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K조합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등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여 그 명의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위 대출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나아가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북 음성군 L 공장용지 1310㎡

2. 충북 음성군 L, M

[도로명주소] 충북 음성군 N

시멘트벽돌 및 경량철골조 스테트 및 조립식판넬 및

칼라강판지붕 2층 공장

1층 144.15㎡

2층 132.1㎡

1층 165.12㎡

1층 136.16㎡

1층 191.54㎡

1층 74.4㎡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기숙사

29.72㎡, 끝.

